



교양교육센터 규정

제정일	2015. 2. 1
개정일	2023.11. 1
개정차수	4차
담당부서	교양교육센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양교육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0)

제 2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모든 산업 또는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 및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개정 2020. 8.10, 2023.11. 1)
2.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 개편, 편성, 운영, 평가 업무 (개정 2020. 8.10, 2023.11. 1)
3. (삭제 2020. 8.10)
4. (삭제 2020. 8.10)
5. 학생의 소양과 교양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6. 기타 교양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1]

제 3조 (조직) ① 센터조직은 센터장, 직원, 조교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 2조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0. 8.10]

제 4조 (운영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목표와 산업체의 요구에 기초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능력과 스킬, 태도를 갖추고 인성과 교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0. 1)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 1, 2023.11.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 1)

1. (삭제 2023.11. 1)
2. (삭제 2020. 8.10)
3.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4.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 (개정 2015.10. 1, 2023.11. 1)
5.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와 개선 (신설 2015.10. 1)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3.11. 1)

⑤ (삭제 2023.11. 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5조 (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